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김영호 의원 외 10인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시민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구미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법 질서 확립 및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위해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시와 시민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민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강력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음